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411,472,857	72,344,186
일반회계	2,106,461,801	63,193,854
특별회계	305,011,056	9,150,332
공기업특별회계	218,033,725	6,541,01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0,997,516	3,029,92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7,036,209	3,511,086
기타특별회계	86,977,331	2,609,320
교통사업 특별회계	26,538,673	796,16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40,325	64,210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238,619	97,159
대지보상 특별회계	1,216,000	36,480
기반시설 특별회계	103	3
수질개선 특별회계	24,766,684	743,001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8,521,786	255,654
균형발전특별회계	20,555,141	616,65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681,999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5,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